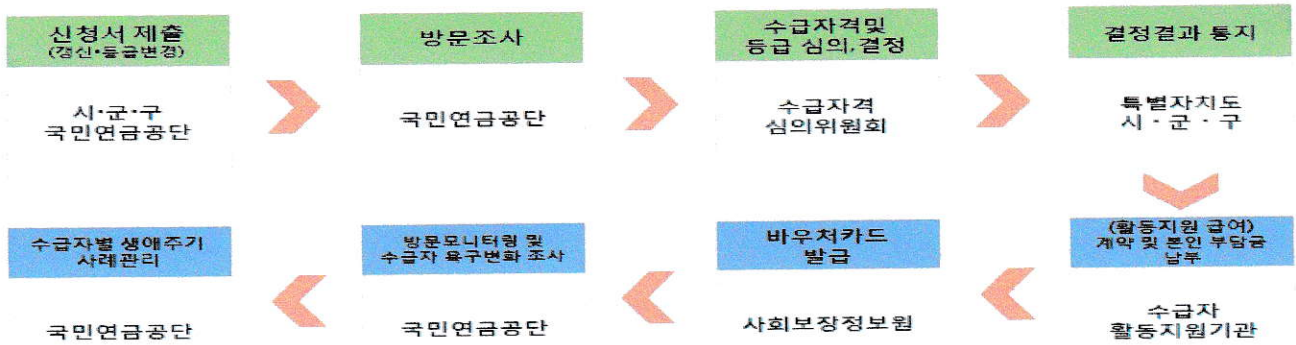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 신청서 제출

-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모든 장애인
- * 신청서 제출처: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 방문조사

-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 심의내용 - 인정조사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 심의
 - 1 ~ 15구간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결정
- * 결정통지: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통지

■ 급여이용

- * 수급자: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카드발급
- * 활동지원기관: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 활동지원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1)배우자, (2)직계혈족, (3)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4)배우자, (3)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6)직계혈족, (7)형제·자매

구 분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직계혈족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남동생, 여동생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아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